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기업대출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생계유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계대출 상품과 구분됩니다.
- 저축은행은 대출 가용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신용 및 각종 담보에 기반하여 대출을 제공하며, 부동산 이외에도 동산·채권 등 다양한 범위의 담보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은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구분됩니다.
 - **(운전자금대출)**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시설자금대출)** 기업설비의 취득·신설·증설·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②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Q1. 기업대출의 자금용도별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 원재료 구입, 종업원 급여·상여금	▶ 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자금	▶ 회사 인수자금(회사 인수를 위한 지분인수, 지산·부채 인수, 합병 등)
▶ 차입금 상환자금 등	▶ 공장 등 업무용시설(부지 포함) 매입 자금·임차보증금 등	▶ 기계장치의 구입, 설치, 자가제작자금

↳ **Q2. 기업대출의 자금용도 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 기업대출자금은 자금용도의 목적범위 내로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대출자금의 유용 시 해당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Q3. 모든 기업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기업여신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6.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b.co.kr) 또는 고객센터(1522-7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 상품개요 및 특성

상 품 명			상 환 방 법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 <input type="checkbox"/> 원금균등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
적용 금리	% <hr/>		대출 금액	<hr/> 원
금리적용방식	<input type="checkbox"/> 변동 <input type="checkbox"/> 고정 <input type="checkbox"/> 혼합		대출 기간	취급 후 <hr/> 개월
증도상환수수료	<input type="checkbox"/> 부과대상 <input type="checkbox"/> 부과대상 아님		채권 보전	<input type="checkbox"/> 담보 <input type="checkbox"/> 신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반금융소비자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5인 이상 법인·조합·단체는 전문금융소비자로 금융소비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은 아니나, 일반금융소비자 대우를 요청하시는 경우 상품설명과 함께 설명서를 제공해드립니다.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님께서 원리금(대출원금+이자) 상환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의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며, 심사 후 금융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가입한 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 비용의 경우, 좌측 체크박스(☒)에 표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 (_____)%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_____)년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저축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준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자세 : (_____) 원

※ 인자세란 인자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자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감액/말소
- 확인 서면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주소 변경

구 분	부담하게 되는 금액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 X 일별 채권할인율(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예시) '21.7.30일 기준 1억원 설정 시 43,750원 부담※ 상세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해당 금융기관 확인서(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을 확인)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에 제출 필요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비용

※ 다만,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구 분	부담하게 되는 금액
근저당권 설정 신규 설정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 법무사수수료 * 예시) 대출금액 2억(채권최고액 2.2억) 기준 등록세 44만원 + 교육세 8.8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1.5만원 + 법무사수수료 19.9만원 = 74.2만원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상이 * 예시) 일반지역 15,000원, 원거리지역 22,000원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 주소지,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 * 예시) 서울 단독주택 감정가 9억 기준, 약 94만원(수수료 88.4만원 + 실비 5.6만원)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보수 및 신탁 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금액 × ()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미사용한도 × () % × 운용기간 ÷ 365(윤년은36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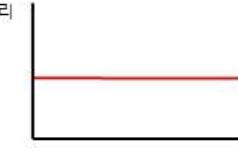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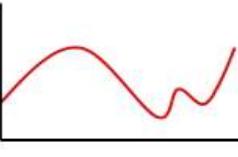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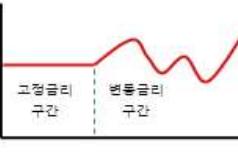
기타 비용 : 항목 () 금액() %,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

3 | 대출이자율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객님이 신청하신 상품은 [] **금리** 방식의 상품입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운용 형태			
특징	▶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일정주기(3/6/12개월 등)마다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결합된 형태
장점	▶ 시장금리 상승기 에 금리 인상이 없음	▶ 시장금리 하락기 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단점	▶ 시장금리 하락기 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상승기 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 ※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서 금융소비자의 자금계획 에 맞춘 운용 가능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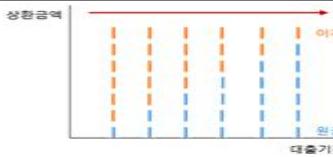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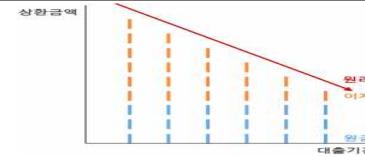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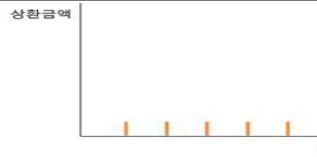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목표이익률(마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 최종금리
	업무원가율	법적 비용	자본원가율	신용원가율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 **기준금리는** 대출자금 조달비용을 말함. (조달원가율=정기예금 평균가중금리)
※ 변동금리의 기준금리 산출은 은행연합회의 COFIX기준금리를 적용하며 COFIX기준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익월에 적용
- **가산금리는** 대출업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인 업무원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을 합한 금리에 조정금리를 가감하여 산출된 금리를 말하며,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
 - **업무원가율** : 인건비, 경비 등 대출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법적 비용 이외의 비용
 - **법적 비용** : 법규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햇살론 출연금, 예금보험료 등)을 합한 값
 - **자본원가율** : 비 예상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는 필요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산출한 비율로 법규에 따른 최소 자기 자본비율에 BBB- 등급 1년 채권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리
 - **신용원가율** : 개인은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조회 전체 개인신용평점별 불량율 및 법인은 IBK기업은행 또는 NICE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CRETOP)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별 부실율
 - **목표이익률** : 각 상품 및 대출자산별 기대하는 합리적인 목표이익
 - **조정금리** : 전결 조정 금리, 부수거래(급여통장 개설·카드실적·수신실적 등) 감면금리 등
-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 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 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별 특징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p>“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총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p>“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p>“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로 대출받은 경우)

※ 이해를 돋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사이며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상환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1,810만원	500만원	2,310만원	8,190만원
2년	1,900만원	410만원	2,310만원	6,290만원
3년	1,995만원	315만원	2,310만원	4,295만원
4년	2,095만원	215만원	2,310만원	2,200만원
5년	2,200만원	110만원	2,31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50만원	1.155억원	-

- 원금 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2,0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8,000만원
2년	2,000만원	400만원	2,400만원	6,000만원
3년	2,000만원	300만원	2,300만원	4,000만원
4년	2,000만원	200만원	2,200만원	2,000만원
5년	2,000만원	100만원	2,10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00만원	1.15억원	-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2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3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4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5년	1억원	500만원	1.05억원	0원
합 계	1억원	2,500만원	1.25억원	-

●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

-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록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의 설정** :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및 대출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권	대상 대출상품	담보의 대상	담보권 설정의 절차
근저당권	부동산담보대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
근질권	예금담보대출	담보로 제공한 예금	▶ 예금에 근질권 설정

●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설정 담보권	대출상품 예시	담보권의 실행
근저당권	부동산담보대출	▶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한 후 그 경매 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근질권	예금담보대출	▶ 저축은행은 대상예금을 해지하여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충당

6 |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연 3%**이며, 연체기간별로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로 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한정]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한정]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④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한정]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① 또는 ③에 따릅니다.

⑤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한정] 계좌별 대출원금(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용카드 정지 등)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 신용점수 하락 등)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 약정에 따라 청약철회의 행사기한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을 일부 상환하였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하셨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반환됩니다.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정의	▶ 대출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무효화)하는 것	▶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행사 기한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또는 별도 약정(14일 초과)한 기간 내	▶ 제한 없음(대출 만기 전이면 행사 가능)
장점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기록 삭제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없음
단점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필요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추가담보제공, 거래실적 개선, 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라.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8 |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계약의 연장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9 | 기타 유의 및 안내사항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사업자 대출 한정]**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의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납입방법**
 - 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매분기/매년)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 납입일(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저축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외 유용 관련 주의사항**
 - 자금용도외 유용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금용도외 유용 시 해당금액은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신규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B2B 관련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 구매기업이 물품·목적물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기업에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대출이자 또는 할인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매기업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수유타거래 종합포털(<http://smes.go.kr/poll>)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 신청 신청하지 않음

-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 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신용정보법(연체·부도·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 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또는 한도금액 기준)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①** 기업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②**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님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 상품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IBK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저축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고객부담비용**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 20 . . .

(서명/인)

연대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 : 20 . . .

(서명/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콜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용어	설명
개별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위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합니다.
한도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채무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구채무자)로부터 제3자(신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매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채권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구채권자)로부터 제3자(신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구채권자)에게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저축은행(신채권자)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강제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다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잔액 또는 납입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담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 	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재무정보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근저당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경매)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신용평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
근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
양도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담보물 소유자)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투기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담보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자(소유자)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공매)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
		전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